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6. 19(금) 10:00

제223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도시안전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I. 제안경위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0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20년 5월 2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2019회계연도 도시안전국 세입·세출 결산

1. 도시안전국 결산 총괄

가. 도시안전국 세입 총괄

(단위: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세입결산액(B)	징수율(B/A)
계	6,771,216,000	8,158,705,060	7,414,309,140	90.8%
주 택 과	883,504,000	1,671,423,870	1,278,524,030	76.4%
안전도시과	166,308,000	193,239,790	177,274,290	91.7%
도시계획과	241,517,000	243,269,220	243,269,220	100%
건 축 과	83,804,000	440,325,010	128,881,430	29.2%
공원녹지과	5,396,083,000	5,610,447,170	5,586,360,170	99.5%

나. 도시안전국 세출 총괄

(단위:원)

부서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집행률(B/A)
계	19,613,691,220	13,208,784,190	5,226,379,870	1,087,193,731	67.3
주 택 과	516,165,000	388,694,330	62,463,870	51,606,110	75.3
안전도시과	3,147,871,000	2,531,950,020	2,120,000	612,314,970	80.4
도시계획과	5,506,434,220	1,923,738,570	3,480,263,000	102,432,650	34.9
건 축 과	391,332,000	357,332,520		33,540,480	88.9
공원녹지과	10,051,889,000	8,007,068,750	1,681,533,000	287,299,521	79.6

- 2019회계년도 도시안전국 세입결산액은 74억 1,430만 9천원으로 금천구 세입 결산액 대비하여 1.2%이며, 징수결정 대비 징수률은 90.8%임.
- 2019회계연도 도시안전국 소관 지출액은 132억 878만 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8,719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67.3%임.

다. 집행잔액(불용액)

○ 예산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원)

부서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	사유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산감	예산집행액	보조금집행잔액
계	19,613,691,220	1,087,193,731	5.54	558,245,250	48,258,870	425,055,070	59,565,141
주택과	516,165,000	51,606,110	9.99	4,101,600	0	51,606,110	0
안전도시과	3,147,871,000	612,314,970	19	529,103,000	21,958,870	60,598,410	654,690
도시계획과	5,506,434,220	102,432,650	1.86	22,395,450	26,300,000	23,233,200	30,504,000
건축과	391,332,000	33,540,480	8.57	2,645,200	0	20,539,670	10,184,610
공원녹지과	10,051,889,000	287,299,521	2.8			269,077,680	18,221,841

○ 도시안전국 집행률 저조사업

(단위 : 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액(가)	지출액(나)	이월액(다)	집행잔액 (가-나+다)	집행률 (나/가)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1,200,000	0	0	1,200,000	0%
	주민리더교육	3,100,000	0	0	3,100,000	0%
	입주자 대표회의교육 강사료	600,000	300,000	0	300,000	50%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28,255,000	14,339,990	0	13,915,010	50%
	재건축안전진단 현지조사 수수료	3,321,000	1,838,250	0	1,482,750	55%
	공동주택 분양가, 분쟁조정 심사위원회	896,000	280,000	0	616,000	31%
안전도시과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917,753,000	390,050,000		527,703,000	43
도시계획과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	601,500,000	288,349,520	286,850,000	26,300,480	47.9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계획 수립	20,500,000	5,721,950	0	14,778,050	27.9
	G밸리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3,000,000,000	118,638,000	2,881,362,000	0	3.9
	지구단위계획 수립	11,720,000	6,895,160	0	4,824,840	58.8
	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517,897,000	255,336,650	232,051,000	30,509,350	49.3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1,450,000,000	658,100,540	764,430,000	27,469,460	45%
	공원 내 지능형 CCTV 설치	200,000,000		200,000,000	0	0
	호암산자락 방수설비 공원조성	700,000,000	15,840,000	649,256,000	34,904,000	2%
	고부가가치 텃밭 조성 운영	6,000,000		6,000,000	0	0

※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출(집행률 70% 미만 사업)

○ 도시안전국의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은 5.54%이며 구 전체 7.6%보다 2.0% 낮은 비율임.

도시환경국 집행률 저조사업을 검토하여 불 때에 예산의 수립이후 해당 사업을 진행할 경우 보다 철저한 계획수립과 집행에 있어서도 세밀한 예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예산의 전용 및 이체 현황

○ 예산전용 현황

(단위: 원)

구분	건수	전용금액	비고
계	5	50,348,000	
안전도시과	1	29,008,000	
도시계획과	2	16,340,000	
건축과	2	5,000,000	

○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2019회계연도 도시안전국의 예산전용은 총 5건 5,034만원을 전용하였음.

○ 예산이체 현황 : 해당 내용 없음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A-B-C)
				계(C)	명시 이월	사고 이월	
도시안전국 (14개 사업)		7,689,611	2,345,404	5,226,379	2,137,803	3,088,576	117,826
주택과	공동주택 지원	254,854	154,797	62,463		62,463	37,592
도시안전과	재난방재 (성인지)	166,980	162,352	2,120		2,120	2,507
도시계획과	도시종합관리 계획수립	601,500	288,349	286,850	286,850		26,300
	G밸리 상징가로 조성	403,300	323,300	80,000		80,000	0
	G밸리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3,000,000	118,638	2,881,362		2,881,362	0
	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517,897	255,336	232,051	232,051		30,509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정비	1,451,080	659,179	781,681	764,430	17,251	10,219
	창의적어린이 놀이터재조성	344,000	324,191	11,216	5,216	6,000	8,592
	공원 내 지능형 CCTV 설치	200,000	0	200,000	200,000		0
	고부가가치 텃밭 조성 운영	50,000	43,419	6,000		6,000	580
	호암산자락 방수설비 공원조성	700,000	15,840	682,636	649,256	33,380	1,524

○ 2019회계연도 도시안전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른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은 총 6건 21억 3,780만 3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음.
- 사고이월은 총 8건 30억 8,857만 6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Ⅲ.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 기금결산 현황

(단위: 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계	3,231,094,660	444,675,340	735,136,530	290,461,190	3,675,770,000
재난관리기금	3,231,094,660	444,675,340	735,136,530	290,461,190	3,675,770,000

- 도시안전국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1개 기금으로
- 전년도말 조성액은 32억 3,109만 4천원이며
 -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6억 7,577만원이고
 - 당해연도 사용액은 2억 9,046만원임.

참 고 자 료

☞ 예산·결산 자료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0. 4. 30.] [법률 제16889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지방회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감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